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2. 1 선고 2022가단12112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3. 2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41,666,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7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18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10. 12. ‘C는 원고에게 141,666,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6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는 C의 배우자였는데, 두 사람은 2021. 12. 21. 협의 이혼하였다. 다. C는 2019. 10. 2. 원고에게 ‘본인은 배우자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채권채무(민사사건 재판번호: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1587호 대여금)에 대하여 배우자 C가 원고에게 2019. 10. 31.까지 변제하는 건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함을 확인합니다. 만약 배우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, 본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2019. 12. 31.까지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.’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확인서(이하 ‘이 사건 확인서’라 한다)를 작성하여 주었는데,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인쇄되어 있고,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, 2019. 8. 12.자로 본인 신청에 의해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 성립

1) 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(민사소송법 제358조),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반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, 인영 부분 등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·날인·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47490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

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,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된다(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, 피고는 C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원고는 C로부터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,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날인행위가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결국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. 오히려,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, 즉 피고는 위조 주장을 하면서도 형사고소나 기타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,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보다 약 두 달 전에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, 위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이 공백이고, 피고는 C가 위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인감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점, 피고가 C와 이혼하기는 하였으나, 그 이혼 시기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부터 약 2년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.

나. 소결론

그렇다면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판결금인 141,666,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. 7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윤아영